

2006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님들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

한그루녹색회에서는 2006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님들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. 1차기간(2006.1.2~2.28)에 신청해주신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님들께는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이 발급되었으며, 현재 2차추천이 진행중입니다. 숲을 아끼시고 자연을 사랑하시는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님들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.



<명예산림보호 지도원>

제 13조 (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위촉)

산림청장, 시도지사, 시정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(이하 "위촉권자"라 한다)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산림보호지도원(이하 "지도원"이라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- 1) 독립가
- 2) 임업후계자
- 3) 산악단체의 회원
- 4) 환경관련단체의 회원
- 5)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
- 6) 위촉권자가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 14조(지도원의 임무 등)

1 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1)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
- 2)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

3 지도원은 관할지역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혜택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.

- 1) 위촉권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연휴양림, 산림박물관, 수목원의 무료입장 다만, 시설물 사용료 등은 제외한다.
- 2) 산림법시행규칙 제 102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통제구역에의 입산

4 지도원은 제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을 한해에도 푸른숲선도원과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님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한그루 녹색회가 앞장서겠습니다. 전국의 숲 지킴이로서, 푸른숲을 만들어 나가는데 푸른숲선도원과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.